

	문	서	명	문서번호	KQ-P-90-016	
	도급업체 안전관리 절차서			개정일	2023. 06. 26	
				개정차수	4	1 / 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남제비스코(주)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업체의 도급공사에 대한 안전 작업관리 및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도급업체의 각종 정비,보수 등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와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 하며, 또한 당사의 사업주와 도급사업주 상호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도급업체

강남제비스코(주)와 공사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는 공사업체를 말한다.

3.2 시행부서(발주부서)

도급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의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3 협의체

강남제비스코(주) 사업주와 도급업체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에서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문서명	도급업체안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Q-P-90-016	개정차수	4	2 / 6
-----	-------------	------	-------------	------	---	-------

4. 책임과 권한

4.1 시행부서

- (1) 시행부서장은 작업기간이 1개월 이상의 도급업체 선정 시 **상해·질병 및 사고기록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3년), 안전·보건 정보(안전보건방침·조직도·자체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표 (KQ-P-90-016-F05)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도급업체는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안전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시행부서장은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작업자에게 당해 도급공사 및 공정에 관련된 화재,폭발,독성물질의 누출 등의 잠재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비상대피경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작업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관리자를 지정 입회하여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하도록 한다.
- (3) 시행부서장은 안전작업 신청서(KQ-P-90-016-F01) 및 작업계획서(KQ-P-90-016-F02)를 작업 전 2일까지 안전보건관리부서에 제출한다. 또한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공사의 발주 시에 각종 장비의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구비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통보 하여야 한다.
- (4) 시행부서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안전작업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미 가입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작업 신청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5) 시행부서장은 휴·무일 작업 시 휴·무일 입장허가원(KQ-P-90-016-F03)를 작성하여 작업 2일전 까지 안전보건관리부서에 제출한다.
- (6) 시행부서장은 도급공사 착수 전 작업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조치사항을 전달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7) 일일공사 시간은 당사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 (8) 연장 작업은 실시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책임자는 연장 안전작업신청서를 시행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 일 근무시간 종료 3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부서에 제출 및 경비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문서명	도급업체안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Q-P-90-016	개정차수	4	3 / 6
-----	-------------	------	-------------	------	---	-------

- (9)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위험작업관리절차서 (KQ-P-90-010)에 따라 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 1) 가스절단기, 아-크용접기, 그라인더 등 용접·용단 작업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 2) 탱크내등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 3) 분전실, 변전실 등 정전 및 활선작업
 - 4) 포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는 굴토작업
 - 5)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고소작업
 - 6) 기타 위험이 내재된 작업

(10) 시행부서는 작업기간이 1개월 이상의 도급업체에 한해 발주 시 평가한 내용을 도급업체 작업자가 준수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순찰 점검하여 반기 1회 도급업체 평가표(KQ-P-90-016-F06)에 기록 유지한다.

- 1) 작업기간에 관계없이 작업 종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 2) 작업 종료 평가 이후 6개월 이내 재도급 시 평가하지 않으며 단, 사고가 발생하거나, 작업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 3) 상주업체(경비실, 식당 등)도 이에 해당한다.
- 4) 도급업체 평가표는 안전보건관리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4.2 도급업체 사업주

(1) 작업기간 1개월 이상의 도급 시 도급업체 사업주는 시행부서에서 실시하는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표(KQ-P-90-016-F05)를 위해 상해·질병 및 사고기록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3년), 안전·보건 정보(안전보건방침·조직도·자체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도급업체는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안전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도급업체 사업주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 관련 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도급업체 자체적 교육 훈련 가능)
- (3)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당해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의 작업자들이 도급공사 및 공정과 관련하여 화재, 폭발, 독성물질의 누출 잠재 위험성에 대한 내용 및 비상대피경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 숙지시 추가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문서명	도급업체안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Q-P-90-016	개정차수	4	4 / 6
-----	-------------	------	-------------	------	---	-------

- (5)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의 작업자들이 사업장내에서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 도급업체 사업주는 시행부서 및 안전보건관리부서에서 작업현장의 위험요소 개선 요청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7)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의 작업자들이 도급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한 위험성을 즉시 시행부서 또는 안전보건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8)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9)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당해 작업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입회작업 관리하도록 한다.
- (10)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자의 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에는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며 즉시 시행부서 및 안전보건관리부서에 통보한다.
- (11) 도급업체 사업주는 사고발생시 사고현장을 유지 보존한다.
- (12) 도급업체에서 반입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기계기구(용접기, 절단기, 전동공구, 전선 릴 등)는 사전에 안전점검(확인)을 받고 사용한다.

4.3 안전보건관리부서

- (1)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업체 사업주, 안전관리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은 협의체 회의록 (KQ-P-90-016-F07)에 기록·관리한다.

다만 1년 동안, 실제 작업일수* 30일 이상의 도급업체만 해당한다.

* 실제 작업일수 : 공사 및 작업 시작 전 사전준비 일수 모두 포함

- (2) 협의체의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 2)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우려 시 대피방법
 - 4) 도급주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아차사고, 위험성평가, 유해요인조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문서명	도급업체안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Q-P-90-016	개정차수	4	5 / 6
-----	-------------	------	-------------	------	---	-------

- (3)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협의체점검일지(KQ-P-90-016-F08)에 기록·관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KQ-P-90-016-F09)에 기록·관리한다.
- (4) 도급공사 착수 전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조치사항을 전달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5) 안전보건관리부서는 도급공사 착수 전에 도급업체 사업주 및 작업자에게 사업장 내 안전수칙과 안전작업 요령 등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작업시작 승인 후 시행부서의 작업관리자, 도급업체 안전담당자 각 1인 이상 입회 하에 작업이 진행 되도록 한다.
- (6)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제출한 안전작업 신청서(KQ-P-90-016-F01)를 접수한다.
- (7)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작업기간이 1개월 이상의 도급업체에 한해 발주 시 평가한 내용을 도급업체 작업자가 준수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순찰 점검하여 반기 1회 도급업체 평가표(KQ-P-90-016-F06)에 기록 유지한다.
 - 1) 작업기간에 관계없이 작업 종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 2) 작업 종료 평가 이후 6개월 이내 재도급 시 평가하지 않으며 단, 사고가 발생하거나, 작업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 3) 상주업체(경비실, 식당 등)도 이에 해당한다.
 - 4) 도급업체 평가표는 시행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 (8) 도급업체의 출입자 교육은 안전보건교육훈련절차서(KQ-P-90-005)에 따른다.

4.4 총무관리 부서

- (1) 도급업체 출입 시 정문에서 인원, 장비 현황 파악 확인
- (2) 휴무일 작업출입자 통제

문서명	도급업체안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Q-P-90-016	개정차수	4	6 / 6
-----	-------------	------	-------------	------	---	-------

5. 절차

5.1 작업 통합 절차

- (1)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표(KQ-P-90-016-F05)를 통한 도급업체 선정
- (2) 안전작업신청서(KQ-P-90-016-F01) 및 작업계획서(KQ-P-90-016-F02) 작성 및 제출
- (3) 작업 현장 확인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개선
- (4) 안전보건교육 실시
- (5) 작업실시 및 순회점검
- (6) 현장 확인 평가 후 작업 종료
- (7) 작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도급업체 평가표 작성(KQ-P-90-016-F06)

6. 기록 관리

서식명 (서식분류번호)	보관년한	보존년한	보관 책임자
안전작업 신청서 (KQ-P-90-016-F01)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작업계획서(KQ-P-90-016-F02)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휴.무일 입장 허가원 (KQ-P-90-016-F03)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연장 안전작업신청서(KQ-P-90-016-F04)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표(KQ-P-90-016-F05)	2	3	안전보건관리부서장
도급업체 평가표(KQ-P-90-016-F06)	2	3	안전보건관리부서장
협업체 회의록(KQ-P-90-016-F07)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협업체 점검일지(KQ-P-90-016-F08)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협업체 합동 안전·보건점검(KQ-P-90-016-F09)	1	2	안전보건관리부서장

7. 관련 문서

- (1) 위험작업관리절차서(KQ-P-90-009)

8. 제정일자

2006. 1. 4